

# 서면답변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이 만 재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자치행정과장)	답변일자	2006년 12월 11일
회 의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문요지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 1부. 끝.

등록번호	자치행정과-8347
등록일자	
결재일자	2006. 9. 25
공개구분	공개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추진의 생산성 도모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



**평 창 군**

(자치행정과)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 요약

<p>I. 추진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법 제77조</li> <li>○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841호, 2005.5.26)</li> <li>○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 2005.12.8)</li> </ul>
<p>II. 운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 (1년)</li> <li>○ 적용대상 : 전 직원 702명 (청경, 공중보건의, 비정규직 포함)</li> <li>○ 소요예산 : 440백만원 (제2안 기준)</li> </ul>
<p>III.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후생복지사업의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 '06년 후생복지 관련 예산 현황 : 3건 114백만원</li> <li>2. 복지서비스 항목별 운영기준(기본항목 + 자율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본항목 (필수기본항목+선택기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li> </ul> </li> <li>②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li> </ol> </li> <li>3.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li> </ol>
<p>IV.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규 제정</li> <li>2. 위탁운영사 선정 ☞ 대한송유관공사, ezwell사, 농협, e-제너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netiwell</li> <li>3.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li> <li>4. 개인별 후생복지 점수 부여(1점 1천원) ☞ [900점(기본 + 근속 + 가족) + 평생학습] ※ 평생학습점수 2008년부터 적용</li> </ol>
<p>V. 운영 항목별 추진 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규 제정 : 10월중</li> <li>2.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 10월중</li> <li>3. 위탁 운영사 선정 : 10월중</li> <li>4.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작성 : 10월중</li> <li>5. 직원교육 실시 : 11월중</li> <li>6. 전 직원 복지점수 배정 등 운영준비 : 12월중</li> </ol>

#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추진의 생산성 도모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계획

-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복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복지 혜택의 형평성 증진 도모
-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추진의 생산성 도모

## I.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841호, 2005. 5. 26 )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 2005. 12. 8 )

### -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미(대통령령 제2조 제1호) -

“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임.

## II. 운영개요

-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 (1년)
- 적용대상 : 전 직원 702명 (청경, 공중보건의, 비정규직 포함)
- 소요예산 : 440백만원 (제2안 기준)

### III.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

#### ① 각종 후생복지사업의 맞춤형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복지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복지혜택의 형평성 증진 도모  
⇒ 복지수요가 조직구성원 일반에 공통적이지 않고 특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되고 특정요건 구비자를 수혜대상에서 배제시켜도 그 혜택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는 항목은 제외  
(예:관사이용, 임대주택, 대학학자금 등) - 중앙인사위원회-

#### ○ '06년 후생복지 관련 예산현황 : 3건 114백만원

- 공무원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 20백만원
-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 64백만원
- 자율혁신연구모임 : 30백만원

※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특정요건을 갖춘 자(미취학아동이 있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어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운영에서 제외.

#### ② 복지서비스 항목별 운영기준 (기본항목 + 자율항목)

##### 1. 기본항목 (필수기본항목 + 선택기본항목)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전직원 의무선택  
(조직목적과 개인목적의 균형·조화 원칙)

##### 가. 서비스 항목 (3개 항목)

- 필수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
- 선택기본항목 : 의료비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등

##### 나. 기본항목 설계 기준

- 생명·상해보장보험은 5천만원 ~ 2억원의 범위내에서 의무 선택
- 의료비 보장보험은 1천만원 한도로 의무 가입
-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20%이상을 선택기본항목으로 사용
- 종합건강검진은 2년에 1회 공무원 본인 반드시 실시

다. 세부운영 내용

1) 생명/상해 보장보험

담 보 명	보험가입금액	보 장 범 위
생명·상해 보장보험	5천만원 ~ 2억원	- 공무원 본인의 재해사망(질병사망 포함) -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상, 재해율별 재해장해 보장(3% ~100%)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료 적용방식 : 평균연령 보험료를 적용한 단일보험료

2) 의료비 보장보험

담 보 명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의료비보장	입원 1회당, 1천만원 한도	- 공무원 본인 입원시,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법정 비급여 의료비 100% 보장 (단, 병실차액은 50%까지 보장)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분만비 등		
		- 법정 비급여/ CT,MRI, 초음파검사료, 식대, 병실차액,임의비급여 등		
		- 자동차 손해보상, 공무상 재해보상 등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이중보상 금지(의료실비 보상) - 제외대상 질병의 범위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		
		구 성	보장범위	지급금액
		의료비 보장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의료비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암보장 (면책기간 30일)	암 진단시	1천만원
			상피내암 진단시	1백만원
			경계성종양 진단시	3백만원

- 보험료 적용방식 : 평균연령 보험료를 적용한 단일보험료

3) 종합건강검진

- 건강검진 기관(병원)을 선정하여 단체협약후 일괄 신청을 받아 실시 ⇒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대상

## 2. 자율항목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목 설계 제공으로 공무원이 자율적 선택가능

가. 서비스 항목 :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나.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 구성
-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간 균형과 조화 추구
- 복지제도 운영의 능률성과 복지혜택의 공정성 확보

다. 세부항목 (안)

항목별	상세분류	수혜범위	지급대상(예시)	지급제외(예시)
건강관리	병원진료	본인, 배우자	병원진료비	
	건강관리	본인, 배우자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시력교정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침술, 한방진료, 종합건강검진기관검진	한약, 영양제등의 음용, 선글라스등
자기개발	학원수강	본인	외국어학원, 컴퓨터학원등 능력개발과 관련한 사설 학원 수강	
	도서구입	본인	능력 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등
여가활용	콘도/리조트이용	본인및동반 부양가족	휴양시설 이용료	
	레포트츠	“	래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등	
가정친화	여행상품	“	교통비, 숙박비	여행거리 12km미만 여행비용, 여행기념품및 여행물품비용(단, 주유는 제외)
	공연관람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부모부양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부모	효도관광, 건강검진, 자석요, 안마기, 발맞사치기등	
	자녀교육	취학전 자녀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등	초, 중, 고생 사설학원비용

※ 향후 직원의견 수렴 후 변경가능

### ③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 1. 복지점수 구성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

-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로 구분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평생학습 이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 2.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 제휴카드 사용시
  - ① 카드사용 ⇒ ② 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 지급처리
- 영수증 처리시
  - ① 자유허목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제출 ⇒ ② 지급처리

#### 3. 지급제한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상품권, 증권·채권 구입 등)
-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대중잡지구입 등)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성형, 치열교정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단순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찜질방이용 등)

#### 4.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
  - 전출·해외파견·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 부터 정지되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 제4호(육아휴직), 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 필수 기본 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 시보 근무중인 자
-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5. 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

-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을 기준으로 부여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 점수만 부여함
- 전입자 : 전입일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 부여
  - 단, 11월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필수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 점수만 부여함
- 휴직 및 6개월이상 국외파견 복직자
  -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휴직 및 국외파견·복직(복귀)하는 달을 실근무 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부여
    - 단, 12월 복직(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 필수 기본항목만 적용되는 휴직 및 국외파견
    - 연초 필수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향후 복직시 복직(복귀)하는 달을 실근무 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부여

## 6. 복지점수 이월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IV.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계획

###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규 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의 범위내에서 예규 제정

### ② 위탁운영사 선정

- 위탁운영사 : 6개사
  - 대한송유관공사, ezwel사, 농협, e-제너두(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netiwell 등
  - ※ 대한송유관공사 -강원도청, 농협 -원주시, ezwel사 -인제군, 속초시, 양구군
- 선정기준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위탁 운영사 선정

### ③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
- 임무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 ④ 개인별 후생복지 점수 부여

- 기본사항
  - 기본항목 : 의무선택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 건강검진)
  -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 ※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

- 복지점수 : [900점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 평생학습점수]
  - 기본점수 : 전 직원에게 일률 배정
  - 근속점수 : 매년 1월 1일 기준, 근무년수 1년당 10포인트 배정
    - ※ 근무년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년수 의미
  - 가족점수 : 배우자 100포인트, 직계존·비속 각 50포인트
    -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 (수당규정상 인원제한으로 인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2월 추가 지급요청)
    -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배정 공무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부여
  - 평생학습점수 : 평생학습 이수자
- 복지점수 배정 기준일 : 2007. 1. 1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별 부여)
  - ※ 복지점수 부여 후 연도중에 복지점수 요건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으며 다음해 복지점수 부여시 반영

○ 복지점수 배정 (안)

구 분	합 계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	평생학습 점 수	예산액 (천원)	비 고
제1안	900	400	250	250	-	463,290	
<b>제2안</b>	<b>900</b>	<b>350</b>	<b>250</b>	<b>300</b>	<b>-</b>	<b>430,440</b>	
제3안	900	300	300	300	-	396,710	

※ 평생학습점수 : "직원평생학습"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P 배정 계획이며, 2008년부터 적용

## V. 강원도내 자치단체 맞춤형복지 실시기관

시행처	복지 점수	기본	근속	가족	기타	위 탁 운영사	적용대상	시행일
강원도	650	250	200	200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청경포함)	'06.3.
원주시	900	300	300	300	-	농협	직원(청경,공보의, 비정규직포함)	'06.4.
인제군	900	350	250	300		이지웰	직원(청경포함)	'06.3.

※ 강원도, 원주시 맞춤형복지 설계 시 직원자녀보육료 제외

※ 2007년 시행 검토 및 예정 시·군 (10개 시군)

-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 VI. 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 항목별 추진일정

### ① 그동안 추진사항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간부회의시) : '06. 9. 4
-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에 따른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06. 9. 13  
- 대상 :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일반서무
- 직원의견 수렴 : '06. 9. 15

### ② 향후 운영항목별 추진일정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규 제정 : 10월중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 10월중
- 위탁 운영사 선정 : 10월중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작성 : 10월중
- 직원교육 실시 : 11월중
- 전 직원 복지점수 배정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준비 : 12월중